ESG위원회 운영규정

문서 번호 : 별책-총무-30
개정 번호 : 0
시행 일자 : 2022년 06월 29일
페이 지수 : 총 7 쪽

관리 번호 (CONTROLLED COPY)	
관리 책임자	

제정 및 개정 기록			
작성 팀		기 획 팀	
배 부 처		■비서실■총무■재무■회계■심사■보험■컨관■전산■기획■수영 ■수삼■운항■탱커■인업■인관■관리■영업■업무■해사■공무 ■안관■울산■싱가폴■홍콩■방콕■호치민■콸라룸■자카르타 ■중국본부■일본본부□케미칼선박□컨테이너선박	
시행일자	개정번호	제정 및 개정 내용	비고
2022.06.29	0	신규제정	

【목 차】

F-1.제(개)정 기록부

F-2. 목 차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역 할

제 4 조 구 성

제 5 조 위 원 장

제 6 조 종 류

제 7 조 소집권자

제 8 조 소집절차

제 9 조 결의방법

제 10 조 부의 및 보고사항

제 11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 12 조 통지의무

제 13 조 의 사 록

제 14 조 간 사

제 15 조 규정의 개폐

부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흥아해운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한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역할)
(1)위원회는 회사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 그 활동을 관리·감독·평가·검토한다.
(2)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구성)
(1)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1)위원회는 사외이사 중 제9조의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3)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종류)
(1)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정기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1)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1)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부의 및 보고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ESG 경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4)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사의 ESG 전략방향, 계획, 이행 관련 사항
(2)회사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
(3)회사의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필요 사항
(4)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1)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4조(간사)
(1)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2)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

제1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